

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. 6. 5 선고 2023가단3008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한국자산관리공사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
담당변호사 송진규, 유승호, 박기혁, 김선인, 김도연, 김남훈,
김래성

피 고 A
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은복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현지원
변 론 종 결 2024. 4. 3.
판 결 선 고 2024. 6. 5.

주 문

-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-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(이하 ‘이 사건 부동산’이라 한다) 중 2/13지분에 관하여

2018. 6. 7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. 피고는 원고에게 14,888,20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사실인정

가. 원고는 2018. 1. 26. C으로부터, C의 B에 대한 지급명령채권(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183078호)을 양수하였고, 같은 날 B에게 위 채권양수도 사실을 통지하였는데, 2023. 4. 7. 기준 위 채권의 원리금은 14,888,209원이다(2017. 10. 31. 기준 채권원금은 5,423,024원이었다).

나. B의 아버지 D는 2018. 4. 27. 사망하였는데 사망시 이 사건 부동산과 구리시 E 도로 13㎡를 소유하고 있었고, D의 배우자 피고, 자녀들인 F, G, B, H, I은 2018. 6. 7. 상속재산분할협의(이하 ‘이 사건 분할협의’라 한다)를 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과 위 도로를 소유하게 되었다.

다.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7. 9. 11. 채권최고액 36,000,000원, 채무자 B, 근저당권자 J단체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나 2018. 12. 26. 해지로 말소등기되었다.

라.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주택공시가격은 2018. 1. 1. 기준 216,000,000원, 2023. 1. 1. 기준 243,000,000원이다.

[인정근거]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판단

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,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는데, 이 사건 분할협의를 있었던 2018. 6. 7. 무렵 B의 무자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{B이 2018. 6. 7. 무렵 무자력이어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, 갑 제3호증 내지 제6호증, 을 제1호증,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, 즉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

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으로써 B도 그 채무를 상속하지 않은 점, 피고가 늦어도 1959년 무렵 D와 혼인하여 약 60년 동안 D와 생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보존에 기여한 점, 피고가 D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생활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지 않을 경우 주거 자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는 점, 피고가 D를 부양한 점을 종합하면, D의 상속인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.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,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에 피고에게 B의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(대법원 2008. 7. 10. 선고 2007다74621 판결)}.

3. 결론

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김진혜

별지